

2021. 6. 14.(월)

코로나19 대응
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연장

<재난안전대책본부>



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연장

전남 도내 코로나19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백신접종 실적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'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' 일부수칙을 완화하여 3주간 연장

□ 개요

○ (적용기간) '21. 6. 14.(월) ~ 7. 4.(일) / 3주

○ (적용단계)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+ **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**

※ 전국 : 수도권(2단계) + 비수도권(1.5단계) - 전남, 경북, 경남, 강원 개편안 시범적용

□ 변경된 방역조치

○ (사적모임) 6인까지 허용 ⇨ **8인까지 허용**

※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 등은 **4명까지 제한 유지**

○ (종교시설) 수용인원의 30% ⇨ **50%, 접종 완료자 식사 가능(6.14~)**

※ 접종완료자 수용인원 제외·성가대·소모임 운영 (7.1.~)

○ (방역강화) 방역관리 시설 방역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

- 학교 기숙사, 기업 구내식당·샤워장 등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

-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방역조치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점검

- 휴가철 주용관광지 고위험 시설 방역대책 및 현장점검 강화

※ 예방접종완료자의 경로당 식사 가능 여부는 자체 검토 후 추후 안내

□ 우리군 조치계획

○ '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' 방역수칙 홍보

○ 방역관리 시설 현장점검 강화 및 위반 시 무관용 조치

《완화 불가한 조치》

- ▶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(유형시설(유형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무도장, 홀덤펍, 노래연습장)
- ▶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(기타 시설)

※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*1차 접종자 :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(6.1~) *접종완료자 :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(7.1~)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 ▶ 집회·시위의 경우 300명 미만 ▶ (권고)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▶ (신고·협의) 3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·협의 승인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공통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 등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형시설 5종 (유형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형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* 클럽, 나이트는 8㎡당 1명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
콜라텍무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음식 섭취, 소리지르기 등 비말 발생행위 금지
홀덤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손소독 또는 장갑착용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출입자명부 작성관리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노래(코인)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
실내 스탠딩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계접사수저 등 사용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
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
돌잔치전문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
목욕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작성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작성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음식 섭취 금지(다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칸막이의 경우 30cm 이상 설치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▶ 샤워실 한 칸 띄워 사용
이·미용업	▶ 시설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유지, 밀집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 판매로 분산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(직계가족 제외)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전시회장·박람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
국제회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발언자 테이블 칸 막이, 사전등록제 운영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등 5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▶ 마스크 착용
스포츠 관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▶ 지정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 ▶ 함성·응원 금지 ▶ (실내) 50% 이내로 관중 입장, 좌석 한 칸 띄기 ▶ (실외) 50% 이내로 관중 입장, 좌석 한 칸 띄기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등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
종교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5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 *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식사 허용